

# 美國化學特許實務

(下)

一承 前一

田 磊 恒

〈本會理事·辨理士〉

## ③ 不確實의 證明

萬若 主張이 既存技術의 影響으로 特許가 拒絕當했을 경우 主張된 發明이 不確實한 性質을 가졌음을 證明하는 實驗的證據를 提示함으로써 그 거절을 克服할 수가 있다.

그러한 實驗적 증거를 얻기에는 매우 값비싼 대價를 支拂하는 수도 있으므로 불확실함을 증명하는 實驗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美國代理人이 審查官과 面談하여 그 實驗이 증명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인지의 與否와 그렇지 않다면 심사관이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種類의 實驗인지를 인決定해야 한다.

이것은 實驗을 하는데 있어서 問題點을 解決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믿는대로 實驗이 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심사관이 그 實驗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防止할 수가 있다.

例如하면 심사관은 實驗이 統計的으로 커다란 差異가 있다는 것을 眼히는 方法에 따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實驗에서 첫째 그 性質이 出願에 밝힌 有用性 및 使用度에 매우 密接히 關與되어 있고 둘째 그 성질이 重要한 성질이라면 大部分의 그러한 성질은 不確實함을 증명하는데 기본을 이룰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비록 그 유용성이 醫藥에 관한 것이며同一한 유용성이 既存技術에서 밝혀졌더라도 불확실함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본을 둘 수 있다.

① 더 높은 活性度 ② 더 長期間의活性度 ③ 더 적은 副作用 ④ 改善된 吸收力 ⑤ 더 낮은 有毒性 등이다.

또한 다른 例로는 ① 더 큰 彈性 ② 더 높은 強度 ③ 더 높은 融點 ④ 더욱 큰 安全性 등을

없다.

그뿐만 아니라 必須의인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관이 實質的인 狀況을 잘못理解하진 重合體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새로운 生產物이 심사관에 의해 引用된 기존 기술의 產品보다 중요한 長點을 갖는다면 비록 既存技術化合物이 새로운 산물과 構造的으로 매우 흡사하고 동일한 유용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확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항상 可能하다.

따라서 새로운 화합물이 기존기술 화합물의 公知된 使用方法과 동일한 目的에 대해 유용하지 않다면 불확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쉽다.

### 1. 特許廳에 대한 不正手段

증명이나 論議가 出願人이나 그의 雇傭人 또는 代理人에게 알려져 있는 事實들을 正確히 혹은 完全히反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化學的發明의 불확실함을 증명 혹은 논의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요즘 여러 가지 特許權들이 이러한 理由로 無効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출원인이나 그의 代表者가 特許廳에 대한 不正手段을 犯했다는데 있다.

출원인이나 特許出願에 責任이 있는 그의 雇傭代表者 및 그의 대리인에게 공지되어 있으며 또한 그 출원을 許容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관의 決定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존기술이나 다른 情報가 심사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특허권은 効果的으로 얻어질 수 없다.

또한 만약 어떤 중요한 사실이 그릇된 것이고 그것이 심사관을 混同시키거나 잘못 認識되도록陳述된다면 특허권은 역시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解하거나 잘못解釋할 수 있게周知된다면 역시 특허권은 효과적으로얻을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 즉 特許廳長이나 法廷은 출원인과 그의 대표자는 特許可能與否에 대한 심사관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실들을 심사관이 결정내리기 以前에 특허청에 驗認시킬 義務가 있다고 主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外國人 出願人들은 美國法律이 요구하는明細를 갖춘다는일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發明者가 通常 美國特許廳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거나 혹은 미국 대리인과 連絡하는 사람이 外國出願을 準備하는 사람과同一人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承認된 어떤 特許權의 効力도 발명자나 혹은 出願遂行에 관계된 사람에게 알려진 既存技術資料가 심사관에게 周知된다면 쉽게 攻擊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美國法律의 既存技術明細書 要求에 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것은 출원을 接受하기 전이나 혹은 접수후에 즉각 해야하며 그것을 하지 않고 출원이 許可되었다면 "issue fee"가 支拂되기 전에 再檢討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출원의 誓約이나 陳述은 출원인이 特허청에 기존기술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진술을 表現해야만 하게 되었다. 비록 그것이 要求되지 않더라도 特허청의 規律은 출원인에게 알려져 있는 關聯된 기존기술이 출원접수후 3個月 以內에 參照物의 複寫로서 提出되어야 한다.

## 2. 最近 美國法規의 새로운事實

### (a) 새로운 法規

特許廳 施行法規에 있어서의 最近의 變化는 다음과 같다.

#### ① 出願人の 言語속에서의 誓約 및 陳述

발명자나 出願書에署名한 다른 사람들이 英語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난해부터 特허청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서약 혹은 진술할 것을 要求해 왔다.

물론 그가 서명한 書類內容을 이해한다는 것도 陳述해야 하는데 이 法律은 1978年 1月 1日부터 發効되었다. 特허청은 대부분의 外國人出願者들이 使用하는 언어로 번역된 필요 진술

(Required Statement)을 앞으로 公表할 것 이다.

#### ② 再發行出願(Reissue Application)

특허청은 현재의 特허권이 當然하다고 看做된 출원의 遂行途中 考慮되지 않았던 기존기술이나 정보를 심사관이 考慮하도록 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再發行出願의 사용을 許諾한다.

심사관이 그 기존기술이나 정보가 일부 또는 모든 주장들의 特許可能性에 不利한 影響을 준다고 간주한다면 출원인은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주장들이 特허받을 수 있다면 補正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던지 特허를 免許하려 한다거나 또는 特許權侵害者를 告訴한다거나 혹은 特허받은 후 그 特허를 無効化하는데 사용될수도 있는 어떤 기존기술 및 정보가 當該者에 알려질 경우 매우 價值있게 쓰이는 過程이 된다.

#### ③ 外國使用者에 의한 商標出願

最近의 法廷判例趨勢에서 볼때 特허청 또는 商標廳은 商標登錄을 하는 外國出願人에게 商品의 通用을 보여주는 見本이나 혹은 사용의 진술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며 외국출원인은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첫출원한 接受日에 根據를 두어 美國에서 제출할 수 있다(SCM Corp. V. Langis Foods LTD <DCDC 1976> 170 USPQ 288).

#### (4) 聯合發明者.

"AgPro"의 경우(Sakraida v. AgPro, Inc. <USSC April, 1976> 189 USPQ 449)로서 참조되는 美國法廷의 最近決定은 既存의 要素들의 組合인 力學的發明의 特許可能性에 대한 커다란 利害關係에 대한 것이다.

大法院은 기존요소들이나 成分들의 조합으로 된 즉 그 성분, 요소들에 의해 각각 성취되는 效果들의 總合보다 더큰 효과를 갖는 새로운 혹은 다른 가능성 to 生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며 법원은 이것을 "synergistic"효과로서 참조했다.

既存化合物의 混合物인 化學的發明이 주장됨에 있어서 "synergistic" 혹은 놀랄만한 새로운 효과가 生산되어야 한다는 法規는 恒常存在하게 되며 혼합물에 의해 生산되는 효과는 반드시 혼합물 각각이 낳는 효과의 총합보다 놀랄만큼 크거나 달라야 한다. (完)